

문서번호	정보통신과 5675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20. 3. 30
공개여부	비 공 개

주무관	담 당	과 장	국 장	부시장
저자인	송명영	전결 김종배		
협조	재산관리담당 계약담당 정보보안담당	회계과장 정보기획담당 대 이주연	04.09 04.09 04.09	

- 정보화취약계층 스마트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-

2020년 컴퓨터 나눔사랑 추진계획(안)

추진목적

○ 정보화취약계층에 불용 PC를 정비·보급하여 정보화취약계층 스마트정보화 격차 해소

보급목표 : 70대

사업기간 : 2020. 04. ~ 06.

사업비 : 8,000,000원

보급대상 : 김제시 내 개인 및 단체

○ 개인 :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

○ 단체 : 사회복지시설, 사회단체, 공공기관 등

예산과목: 정보통신과, 정보화생활기반화총과 주민행정편의도모, 전자
지방정부 추진, 컴퓨터 나눔사랑, 재료비



김제시
정보통신과

2020년 컴퓨터 나눔사랑 추진계획(안)

불용 PC를 수집·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화
취약계층에 보급함으로써 정보자원 재활용 및 스마트정보격차 해소 기여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0년 컴퓨터 나눔사랑
- 사업기간 : 2020. 4. ~ 7. (4개월)
- 사업비 : 금8,000,000원
- 보급목표 : 70대
- 보급대상 : 김제시 내 개인 및 단체
 - 개인 :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
 - 공공단체 : 사회복지시설, 사회단체, 공공기관 등
- 사업내용 : 불용 PC를 정비하여 정보화취약계층에 보급
 - 지원장비 : 컴퓨터, 모니터, 키보드, 마우스, 마우스패드, 멀티탭
 - ※ 지원장비 이외는 본인 부담(수리 및 인터넷 회선료 등)
- 예산과목: 정보통신과, 정보화생활기반확충과 주민행정편의도모, 전자지방정부 추진, 컴퓨터 나눔사랑, 재료비

II 관련근거

-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)
-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7조(정보격차의 해소)

III 선정원칙

- 개인(동일가구에서 중복 신청 금지, 1가구 1대)
 - 1순위: 기초생활 수급자중 소년소녀가장 우선

- 2순위: 기초생활 수급자, 장애인
- 3순위: 다문화가정, 차상위계층, 새터민, 한부모 가정 등

- 공공단체(사회복지시설, 사회단체, 공공기관 등)
- 1순위: 컴퓨터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사회단체
- 2순위: 수량 초과 시 심의(심의위원회에서 심사) 후 결정

구 분	구성현황	역 할
위원장	정보통신과장 김종배	총괄
심의위원	정보기획담당 나성희 정보보안담당 신영호 행정정보담당 송영엽	지원 대상 심의 및 선정

IV 추진일정

- 계약의뢰 및 정비업체 선정 : 2020. 4 ~ 5월
- 보급 희망자 접수 및 대상자 확정 : 2020. 4 ~ 5월
- 컴퓨터 나눔사랑 PC 정비 및 보급 : 2020. 5 ~ 6월

V 행정사항

- 소요 예산액 : 금7,980,000원(금칠백구십팔만원)

구 분	산출기초	금액	비고
HDD	75천원 X 70대	5,250천원	초기화 및 PC 정비
스피커	25천원 X 70개	1,750천원	
멀티탭	14천원 X 70개	980천원	

- 예산과목: 정보통신과, 정보화생활기반확충과 주민행정편의도모, 전자 지방정부 추진, 컴퓨터 나눔사랑, 재료비

[붙임]

□ 컴퓨터 나눔사랑 업무흐름도



*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

* 2020년 보급목표 미달 시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하되, 2020년 예산초과 시 중단

□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

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3. 그 밖에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)

제33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)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2. 8. 3.>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
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
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
 5.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1.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
 2.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
 3.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
-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. 6.>

□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7조(정보격차의 해소)

제17조(정보격차의 해소)

-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·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